

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연병호

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2년 2월 23일 박종성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2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·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적용대상(안 제3조)
 - 3억원(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) 이상의 공사
 - 1억원(일반용역은 5천만원) 이상의 용역. 다만, 학술용역은 제외
- 사업주 책무(안 제4조)
 -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체결
 - 근로자 등의 임금과 임대료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

- 임금지불서약서 제출
 -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
-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(안 제5조)
- 공사감독공무원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공사대금 지급사실 사전 공지
 - 직장 수급인은 대가지급 사실을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공지
 - 대가지급 사실 게시
- 대가의 직접지급(안 제7조)
- 발주자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
 - 계약특수조건에는 체불임금 해소 지시사항,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, 직접지급해서는 안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
- 신고센터 설치 등(안 제8조)
-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 설치

4. 검토의견

금번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·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및 임대료 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

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3억원 이상의 공사,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의 공사와 1억원 이상의 용역, 일반 용역은 5천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체결,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등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공사감독공무원에게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서는 공사대금의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8조에서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.

동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체불이 없도록 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, 현재 6개 광역시 및 4개 도와 50개 시군구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조례로 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동 조례를 통하여 지역의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근로자를 위해 바람직한 조례라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1부. 끝.